【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】

통신판매 승인(신청)서

처리기간
7일

근거 :「주세사무처리규정」 제74조

신청인	① 성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상호(법인명)			
	④ 면 허 번 호		⑤ 면 허 구 분	
	⑥ 제 조 장 위 치			

신 청 내 용

⑥ 통신판매 수단 (복수 신청 가능)	□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□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□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(http://shopping.g2b.go.kr) □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(https://www.kmall24.com) □ 전통주 제조자 협회 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□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

상호	사업자등록번호	홈페이지 주소	통신판매업신고번호

⑦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주소	

※ 웹호스팅(웹 서버 대여, 운영 등의 서비스) 업체 인적사항
(신청인이 웹호스팅 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작성)

⑧ 상 호		⑨ 사업자등록번호	

「주세사무처리규정」 제74조에 따라 주류(전통주에 한함) 통신판매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승인 제 호

신 청 인 :

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 (인)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)